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761
------	-----

2005년 6월 28일
교육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6월10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6월 15일

다. 상정일자 : 제28회 정례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
(2005.6.28 상정·심사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교육지원국장 : 배우창)

○ 개정이유는

-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(대통령령 제18247호)으로 중부교육청의 기구가 2005.4.1부터 2국6과에서 4과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회 중 중부교육청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기타 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은

- 중부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중 위원수는 7인에서 5인 이내로 변경하고, 위원장은 관리국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며,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에서 관리과장으로 변경하고, 중부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간사를 재무과 직원에서 관리과 직원으로 변경하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양재대)

□ 기구축소 및 조직변경 관련

○ 지역교육청의 기구는 「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1조 지역교육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에 의거 인구수가 50만명 이상이고 학생수가 7만명 이상 이어야 2국6과를 유지할 수 있으나, 현행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은 (종로구, 중구, 용산구) 인구수는 540,279명이며, 학생수는 59,069명으로서 인구수는 충족되나 학생수가 7만명 미만인 관계로 2005.4.1부터 4과체제로 개편된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의 2국6과·담당관 체제에서 4과·담당관 체제로 기구가 축소되었음.

< 지역교육청기구의 설치기준(제11조 관련) >

구 분	국	과, 담당관
인구 50만 이상, 학생 7만 이상	2국 이내	6과·담당관 이내
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		4과·담당관 이내
기 타		2과·담당관 이내

○ 학생수는 각급학교의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학생수를 말하고, 인구수는 주민등록상의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인구수를 말하는데 중부교육청의 경우 인구수는 50만명 이상으로 2국6과·담당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으나, 학생수가 7만명 미만이어서 조직기구는 규정에 따라 축소·변경하여

- 학무국의 초등교육과, 중등교육과, 평생교육체육과 중 평생교육체육과를 폐지하고,
- 관리국의 관리과, 재무과, 시설과 중 재무과를 폐지하였음.

< 조직 변경 내용(2국6과→4과) >

	당 초	변 경	비 고
학부국	초등교육과	초등교육과	
	중등교육과	중등교육과	
	평생교육체육과		학교보건업무는 초등교육과와 통합, 학원 및 체육청소년업무는 중등교육과 와 통합
관리국	관리과	관리과	
	재무과		관리과로 통합
	시설과	시설과	

□ 조직변경에 따른 정원조정 관련

-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」 제11조 ‘지역교육청 기구의 설치 기준’ 등에 따라 지역교육청 국·과의 설치, 국장·과장의 직급 및 그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게 됨으로써, 「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」 제4조에 ‘지역교육청의 하부조직 설치 및 그 분장 사무 등에 관한 내용도 함께 변경하여 법체 계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
 - 기존의 공유재산심의회 간사를 폐지되는 재무과 직원에서 관리과 직원으로 변경하고,
 - 직제개편에 따라 정원을 축소 조정(교육전문직 : 19명→14명, 지방공무원 : 64명→61명)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.
- 따라서,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회 중 중부교육청 심의회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구와 정원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 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뒤따라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직 변경에 따른 위원수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명칭 변경시 융통성 부여와 일관성 유지를 위해 중부교육청이라는 고유명사 대신에 보편타당한 용어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기구축소 및 조직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으로 질의답변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....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